□ 시 론 □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수와 실무교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내건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2009년 3월 발족했으니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지난 1월에 제3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정착을 위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 혹은 변호사시험의 전 단계로서 '예비시험 신설'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얼마 전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예비시험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미루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조인 양성이라는 테두리를 모두 채울 수 없는 빈 구석이 존재하는 듯하다.

간헐적으로 약간씩 삐걱거림이 들려오긴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쉬하며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상의 문제가 하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교수로 있는 '이론교수'와 법조인 경험을 갖고 교수가 된 '실무교수' 간의 미묘한 갈등이 그것이다.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로 부르는 용례가 이제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바깥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많이 하나, 실무교수는 기실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에서건 소수를이룬다. 그리고 그 소수는 비율만큼의 소수가 아니라, 단순히 머릿수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버리는 소위 '형식적 다수결 원칙'이 확고한대세를 형성하는 한국 대학사회의 풍습, 문화에서 언제라도 무시될 수 있는 소수에 불과하다. 형식적 다수결 원칙 하에서는 51퍼센트에 들지 못한49퍼센트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수는 법정 하한인 20퍼센트 정도이나 실제로는 그비율만큼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 경우 모교의 조교로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들어 갔다가 뒤늦게 대학으로 유턴하였으나 그로부터 벌써 15년의 세월을 보내

신 평

- ·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 중국 인민대학 객좌교수
-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었다. 법조실무의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소위 '전국학회'라는 한국헌법학회 장 등 학회에서의 역할을 맡아 치렀다. 그러니 실무교수라고도 하기 그렇고 또 순수한 이론교수라고도 불리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양자 간에서 비교적 공정한 입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한 대로 실무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수이고, 또 그 비율만큼의역할도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일단 대학에 들어왔다가 실무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일부 이론교수들은 실무교수들이 대학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폄훼한다. 전해들은 말이기는 하나, 어느 학회의 회장 선거 시 실무경험을 하진 후보자가 "제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으나 반성하고 있으니 그 외도를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읍소하듯이 말했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수들의 위상이 이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에 잘 나타나 있다고본다. 그리고 그 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밑으로 처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와 같은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극단적 사고방식에 기한 일탈이라면 법학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반의 이론교수에서 조금 분리시켜 '전투적 이론교수'라고 부를 수 있다.

전투적 이론교수는 기본적으로 실무교수들을 백안시한다.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들이 낯선 외국 땅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며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또 찬밥을 먹으며 천신만고 끝에 겨우 대학의 자리를 얻어 삶의 자리를 폈는데, 한국사회에서 특권적 지위를 구가하던 법조인으로 있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니 살짝 그 속으로 무임승차한 이론교수들이 어찌 밉게 보이지 않겠는가! 또 대학에서의 경험이 얕은 실무교수들이 강의,

考試界 2014/3 3

연구, 학생지도를 삼대축으로 하는 대학 내 교수역할 어느 쪽에서도 무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일정부분 이해되는 선을 넘어 그들은 교조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를 확장해나간다. 어떤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과목을 모두 없애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니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퍼며 동분서주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실무교수들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만 하면 변호사자격을 얻게 되고, 그 교육은 법학의 이론적 측면을 주로 가르치게 된다. 눈엣가시 같은 실무교수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잘 운용이된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교수들만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순혈의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투적 이론교수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실무교수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논문심사이다. 교수의 직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논문작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논문심사에서 특징은 심사대상 논문의 작성자 신원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비하여, 심사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따라서 심사자는 '익명의 신분'으로 마음껏 심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 사회과학의 특성상추상적이고 무정형의 개념 서술이 법학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상심사자가 논문의 당부를 결정하는 양상은 너무나 큰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마음만 먹으면 눈에 거슬리는 실무교수의 논문에 괜한 티를 잡아이를 탈락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별 뜻 없이 이렇게 연못을 향해 돌 던지듯 쉽게 한다. 하지만 당하는쪽은 어떤가? 치명적이다.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 교수직 자체에 깊은회의를 갖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실무교수가 이론교수의 적은 결코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제1차적 목표는 법조인 양성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는 힘을 합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더욱 단단하게 또 우리사회의 일반적 공인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전투적 이론교수들의 그릇되고 편벽한 행태도 중지(衆智)의 상식과 합리성에 기해 차츰 수정되어가기를 바란다.

4 考試界 *2014/3*